

#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95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11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출일 : 2024년 8월 12일  
다. 회부일 : 2024년 8월 14일  
라. 상정일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4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- 추진 필요성

-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
- 시설규모 : (대지) 1,038㎡, (연면적) 685.04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 ~ 2027.12.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471백만원('24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911백만원, 운영비 75백만원, 사업비 485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(2025.1.~2027.12.)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.

#### 〈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
- 소재지 :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3,4층
- 시설규모 : 연면적 455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생활실, 학습실, 사무실 등
- 이용대상 : 가정 밖 남자청소년
- 위탁사무 내용
  -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
  -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
  - 청소년 문제예방사업
  -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
  - 쉼터의 시설물, 장비 등 유지관리
  -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
  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
  - 기타 '시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. ~ 2027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,471백만원('24년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신림청소년단기쉼터는 남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, 정원은 30명으로 숙식제공, 의료지원, 쉼터 캠프(자연활동 및 체험), 가정복지지원 서비스 등 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- 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, 단기 및 중·장기 쉼터는 다양한 이유(폭력, 학대, 가정 내 성폭력, 경제적 사유로 인한 가정붕괴, 이혼 및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)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으로, 의식주 등 생활지원, 학업지원, 자립지원,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
〈 청소년쉼터 구분1〉

구분	일시쉼터	단기쉼터	중장기쉼터
주요 기능	·거리상담, 가출예방, 조기발견·초기개입, 일시보호 및 단기쉼터 연계 등	·가정·사회복귀 지원 및 유관시설 연계 등	·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학업 및 자립지원
입소 기간	·24시간~7일 이내 일시	·3개월 이내 단기보호 *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(최장 24개월)	·3년 이내 *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(최장 4년)
예시	·시립용산청소년일시 쉼터	·시립신림청소년단기 쉼터(남) ·시립금천청소년단기 쉼터(여)	·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 쉼터(남)

- 민간위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,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위기청소년에 알맞은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보임.

1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([https://www.mogef.go.kr/sp/yth/sp\\_yth\\_f014.do](https://www.mogef.go.kr/sp/yth/sp_yth_f014.do)) 일부 발췌

- 다만, 신림단기청소년쉼터는 점검결과 예수금 계정 예산 및 결산 미흡, 강사비 지급시 개인정보 관리 미흡, 계약직 채용 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상위등급 급여 책정·지급 등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탁 법인의 투명성과 행정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〈 최근 3년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지도·점검 지적사항 〉**

- 예수금 계정 예산 및 결산 미흡
- 입소자에 현금 지원 시 본인 명의 통장 미사용
- 강사비 지급시 개인정보 관리 미흡
- 정원가산업무추진비(직원생일선물) 현금 지급
- 계약직 직원 재계약 시 채용절차 누락
- 계약직 채용 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상위등급 급여 책정/지급
- 최종 추경 이후 사업비로 자산취득 지출

**〈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민간위탁 수탁현황 〉**

- 1998. 3. 1. ~ 2001. 2. 28. : 신 규 / 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
- 2001. 3. 1. ~ 2004. 2. 28. : 재위탁 / 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
- 2004. 3. 1. ~ 2007. 2. 28. : 재위탁 / 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
- 2007. 3. 1. ~ 2010. 2. 28. : 재위탁 / (재)대한성공회유지재단
- 2010. 3. 1. ~ 2012. 12. 31. : 재위탁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
- 2013. 1. 1. ~ 2014. 12. 31. : 재계약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
- 2015. 1. 1. ~ 2017. 12. 31. : 재위탁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
- 2018. 1. 1. ~ 2019. 12. 31. : 재계약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
- 2020. 1. 1. ~ 2022. 12. 31. : 재위탁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
- 2023. 1. 1. ~ 2024. 12. 31. : 재계약 /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9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(남)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 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   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관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1,471백만원('24년)

- 인건비 911백만원, 운영비 75백만원, 사업비 485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(☎ 2133-4131)